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398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77호)	최형두의원	2025. 1. 6.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99호)	최형두의원	2025. 1. 7.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594호)	이해민의원	2025. 1. 16.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2025. 8. 28.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 후 제안

(제2212478호)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164호)	이주희의원	2025. 12. 11.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시 영세한 중·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

조제9항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축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감경의 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 설>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처분
· 감경의 기준-----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 9. (생략)

② · ③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

제78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